

수신 () 대표 귀하
(경유)

제목 특수판매업체 집합시설(홍보관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2020. 6. 8.(월) 11:00부터」 서울시 모든 특수판매분야(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등) 교육장·홍보관 등의 집합시설에 대하여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3. 특수판매분야의 집합시설에서 밀접접촉이 이루어지고 방역수칙 준수가 불가능하여, 코로나 19 집단감염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서울 시민들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예방법」 제80조제7호에 의거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되며, 명령을 위반한 영업주에게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집합금지 명령 1부. 끝.

서울특별시
시장인

주무관 김현기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6/08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2240 (2020.6.8.) 접수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대시민공개

집합금지명령

1. 서울시는 2020.6.8. 오전 11시를 기하여 서울지역내 특수판매 업체 중 고위험 집합 시설(홍보관 등)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2호에 근거하여 집합금지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2. 이는 특수판매 업체의 고위험 집합 시설에서 밀접접촉이 이루어지고 방역수칙 준수가 불가능하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3.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 대표와 시설 이용자는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됩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받게 됩니다.
4. 아울러 시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코로나의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홍보관 형태의 집합 시설은 어르신들께는 특히 더 위험한 장소입니다. 코로나19가 안정 될 때까지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지내시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은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 6. 8.

서울특별시



문의안내 : 서울시다산콜센터 120